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4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윤후덕·부승찬·임오경

염태영 · 안규백 · 박희승

홍기원 · 차지호 · 박민규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감소·복구 등의 지원에 한정된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의 범위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를 "해외재난 에 의한 피해의 예방·감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외긴급구호"란 <u>해외재난</u>	2 <u>해외재난</u>
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	에 의한 피해의 예방·감소-
<u>소</u> ·복구 또는 인명구조·의	
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	
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